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-2153호

도시관리계획[특검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

1. ‘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82호(2011.7.7.)’로 결정된 특검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11월 3일
서울특별시

가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

- 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- 2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
 - 가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148,400	—	148,400	100.0	—
주거지역	소 계	139,086	—	139,086	93.7	—
	제1종일반주거지역	24,800	감) 22,145	2,655	1.8	—
	제2종(7층)일반주거지역	26,903	감) 26,903	—	—	—
	제2종일반주거지역	12,363	증) 48,387	60,750	40.9	—
	제3종일반주거지역	13,791	증) 661	14,452	9.7	—
	준주거지역	61,229	—	61,229	41.3	—
녹지지역	자연녹지지역	9,314	—	9,314	6.3	—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위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변경사유
		기정	변경		
변경	성수동1가 685-429번지 일대	제1종 일반주거지역	제2종 일반주거지역	22,145	지역특성이 반영된 건축물 유도를 위한 용적률 체계 수립 및 주변지역 용도지역 변화를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
변경	성수동1가 668-69번지 일대	제2종(7층) 일반주거지역	제2종 일반주거지역	26,903	
변경	성수동1가 656-551번지 일대	제2종(7층) 일반주거지역	제3종 일반주거지역	661	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나눔공 유센터 부지로 지역 내 필요한 주민공동 시설 도입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

- 나) 용도지구 결정조서 : 변경없음
- 3)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 : 생략(열람 장소 비치도서 참조)
- 4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 : 생략(열람 장소 비치도서 참조)
- 5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 : 생략(열람 장소 비치도서 참조)
- 나. 열람기간 : 2016.11.3. ~ 11.17.(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)
- 다. 열람 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(☎02-2133-8386),
성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(☎02-2286-5561)
- 라. 관련도서 : 게재 생략(열람 장소에 비치 도서로 같음)